



「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건의

대한석유협회

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수송용 연료간 가격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1. 7월부터 2006. 7월까지 석유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을 예시한 바 있으며, 정부는 이러한 세율 인상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. 5. 24 「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」를 시행한 바 있음.

그러나, 매점매석 고시의 시행이 2년 정도 경과함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5~6월 반출/통관 허용물량의 방만한 산정기준에 따른 석유사업자들의 재고 과다 보유 및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간 이중기준 적용, 석유수입업자의 통관기준 문제와 세금차익을 이용한 7월이후 덤핑판매 활성화 등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

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, 그 결과 현재에는 동 고시의 시행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기로에 있음.

이에 동 고시가 당초 도모하고자 했던 건전한 석유 판매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시의 핵심사항인 반출/통관 허용물량 산정기준으로 시장내에서의 경쟁자인 정유사와 수입사 모두 동일하게 5~8월 월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수입사의 경우 통관이 아닌 수입신고 물량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, 특히 부당이득 환수를 통하여 고시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동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. ☘